

약관공시사항

□ 기본사항

개정일	시행일	판매종료여부(종료일)	기존고객적용여부
2025-04-29	2025-06-01	판매중	적용 (단, 제3조 제5항은 시행일자 이후 신규,갱신,연장건부터 적용)

□ 신구조문대비표 - 여신거래기본약관

약관명	해당약관 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생략>	제1조(적용범위) ① <좌동>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좌동>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 ② <생략>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지체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 ② <좌동> <삭제>

	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 ⑤ <생략> <u><신설></u> ⑥ <생략> ⑦ <u>제4항, 제5항</u>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 기준 일부터 1개월간 <u>영업점에 비치하도록 합니다.</u>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u>제3항 및 제6항</u>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 배상금률 등을 적용	③ ~ ④ <u><조항 이동></u>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은행은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⑥ <좌동> ⑦ <u>제3항, 제4항</u>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 기준 일부터 1개월간 <u>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u>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u>제6항</u>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 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	---	---

	하기로 합니다.	합니다.
	제6조(담보) ① <생략>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산법,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생략>	제6조(담보) ① <좌동>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4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산법,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좌동>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생략> ② 2013.07.01 (삭제) ③ <생략> ④ <생략> 1. ~ 3. <생략> 4. 제5조, 제20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좌동> <삭제> ② <조항이동, 내용은 좌동> ③ <조항이동, 내용은 좌동> 1. ~ 3. <좌동> 4. 제5조, 제21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

	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 7. <생략> ⑤ <생략> 1. 제6조 제1항, <u>제16조</u>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 3. <생략> <신설> <신설> ⑥ <u>제1항 내지 제5항</u>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 보증인에 대한 통지)	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 7. <좌동> ④ <조항이동, 내용은 좌동> 1. 제6조 제1항, <u>제17조</u>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 3. <좌동> ⑤ <u>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3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u>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개인금융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⑥ <u>은행이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u>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⑦ <u>제1항 내지 제5항까지의 규정</u>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통지)
--	--	---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6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u><신설></u>	① ~ ②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7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u>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금융채무자에 대하여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은행은 제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u>
	<u><신설></u>	제9조(채무조정요청) <u>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u>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 ③ <생략>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10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 ③ <좌동>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7항을 준용합니다.
	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	제11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제10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

	유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u>2014년4월1일(삭제)</u> ③ ~ ④ <생략> ⑤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의 가입 시 은행과 약정한 이율로 합니다.	사유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u><삭제></u> ② ~ ③ <u><조항이동, 내용은 좌동></u>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의 가입 시 은행과 약정한 이율로 합니다.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생략>	제12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u><조항이동, 내용은 좌동></u>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	제13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1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

	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3. <생략>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생략>	여야 합니다. 제12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1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3. <좌동> ③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4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좌동>
	제13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 ④ <생략>	제14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1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 ④ <좌동>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	제15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2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

	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행의 채권 보전 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u>제13조</u>에 준하여 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행의 채권 보전 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u>제14조</u>에 준하여 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5조 ~ 제18조 <생략>	제16조 ~ 제19조 <u><조항이동, 내용은 좌동></u>
	제19조(통지의 효력) ① <생략> ② 채무자가 <u>제17조 제2항</u>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생략>	제20조(통지의 효력) ① <좌동> ② 채무자가 <u>제18조 제2항</u>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u>보며,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u> ③ <좌동>
	제20조 ~ 제24조 <생략>	제21조 ~ 제25조 <u><조항이동, 내용은 좌동></u>
	제25조(약관·부속약관 변경)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제26조(약관·부속약관 변경) <삭제> 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약관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되는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u>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 ⑤ <생략>	약관등의 시행일 직전 1개월간 그 내용을 회사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등을 즉시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합니다.</u> 1. 법령의 개정, 제도의 개선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약관변경권고(명령)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등을 변경한 경우 2. 약관등의 개정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채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등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은행은 약관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된 약관등의 시행일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그 변경 내용(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전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 ⑤ <좌동>
	제26조(관할법원의 합의) <생략>	제27조 (관할법원의 합의) <조항이동, 내용은 좌동>
	제27조 (언어) 이 약관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되며 한글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한글본이 우선합니다.	<삭제>